

'97 환경정책과 기업의 대응방향

지난 3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환경부차관을 초청하여 「'97 환경정책과 기업의 대응방향」에 대해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각계의 환경관련인사들이 참석하여 국내·외 환경여건과 전망은 물론 '97년도 환경부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설명과 기업들의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본지는 이날 발표된 간담회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편집부>

1. 국내의 환경여건 및 전망

문민정부의 출범이후 추진된 개혁정책에 따른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과 민주화로 국민의 관심과 열정이 환경을 비롯한 삶의 질 확보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지난 '96년 3월의 「환경복지구상」선언을 계기로 이러한 현상이 더욱 고조되었다. 또한 민간환경단체 중심의 환경보전운동이 확산되고있으며, 그 양태도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5년 민주화의 일환으로 출범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으로 일면 환경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나 선심성 개발 드라이브 시책이 우선시되고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과 마찰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한편 엄격한 환경규제의 실시가 경제성장, 물가, 국제수지 등에 큰 부담을 준다는 잘못된 인식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들어 기업등으로부터 환경규제완화요구가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환경보호를 위한 기준의 강화나 환경투자의 증대나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가설은 실증분석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지구환경문제가 냉전시대 종식후 최대 외교이슈로 세계무역질서 재편의 주요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가

운데 오존층보호를 위한 CFC 등의 사용규제가 이미 시작되어 가전제품, 자동차 등 관련제품 수출입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으며,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각종 환경협약과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환경법도 환경부적합 상품의 무역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WTO, OECD 등에서는 제품의 품질뿐만 아니라 공정 및 생산 방식(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PPMs) 및 제품전과정 평가기법(Life Cycle Analysis : LCA)을 무역규제의 직간접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에도 OECD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환경정책 및 제도의 선진화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 중장기 환경정책 추진과제

- 환경오염 사전예방체계 구축
 - 개발정책과 사업등을 추진할 경우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에 미칠 환경영향을 신중하게 고려,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양식을 채택
 - 환경영향평가등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기능 강화, 토지이용규제의 실효성 제고등
 - 환경기술과 환경산업을 육성하여 예방적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자율관리를 통하여 생산공정에서부터 오염물질발생을 억제

- 생산공정에서부터 제품의 Life-Cycle을 고려, 환경경영체제(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 EMS) 구축, PPMs에 대한 규제실시등
- 통합적 환경관리방식의 점진적 도입
 - 대기, 수질, 폐기물등 개별 모체별 환경관리방식에서 환경오염을 하나의 System으로 관리하는 통합적 환경관리체계를 구축
 - 폐기물 소각정책 추진시 소각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처리문제를 동시 고려(대기보전정책과 폐기물 관리정책의 유기적 통합)
 - 유해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시 자연환경의 훼손,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면밀히 분석
 - 국토의 주요구성요소인 산, 도시, 하천, 습지, 평야 지역 및 해안을 하나의 체계로 연계 관리
 - 전국 그린네트화 계획 추진등
 - 환경과 경제의 상호 합리적 조화를 도모하고, 농업, 교통등 다른 분야와의 상호연계성 심화
- 환경규제제도의 효율적 제고
 - 오염물질의 직접적 배출과 무관하면서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시키는 절차적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완화
 - 경제적 유인제도등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용
 - 기존의 배출부과금, 환경개선부과금, 폐기물예치금/부담금, 쓰레기 수거료, 하수도 사용료등을 재평가하여 대상 및 요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
 - 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 Trading System)등 총량규제 방식의 적용확대
 -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는 환경규제기준을 단계적으로 예고, 사전적 기술 대응태세 구비
 - 환경규제대상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
 - 사업장 배출규제에 비해 미흡한 실정에 있는 생활오염원과 자연환경분야의 효율적 규제제도 정립
- 오염원인자부담원칙과 수익자부담의 조화
 - 오염원인자가 자신이 유발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적 비용의 형태로 전가하지 않도록 원인자 부담원칙을 철저히 적용
 -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의 비용부담책임)
 - 자기의 행위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포괄적 생산자 책임원칙(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EPR)의 도입
 - 개별사업자 및 개인뿐 아니라 자치단체간의 분쟁 해결의 원칙으로도 적용
 - 오염원인자가 불분명하거나 원인자 부담만을 적용시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등에는 수익자부담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
 - 팔당·대청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 등
 - 지방화 시대의 도래에 따른 지역환경관리 책임강화
 - 지역환경의 보전에 있어 해당주민과 자치단체가 중심적 역할을 하는 지역환경의 자치적 관리 체계 확립
 - 『지역환경계획』 수립, 환경관리기능의 점진적 분권화 등
 - 자치단체간의 환경분쟁을 신속 조정하기 위한 체계 정비
 - 환경분쟁조정대상을 자치단체간 분쟁에 까지 확대하고, 분쟁조정원칙 정립
 - 환경적 위험(Environmental Risk)을 토대로 한 의사결정기반 구축
 - 방치시 환경에 미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대책의 우선순위가 설정되고 우선순위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위해도 평가 및 관리(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 Management)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효율적 환경 인프라 구축
 - 환경기초시설 광역 및 설치·운영 효율화
 - 물관리 종합대책등 장·단기 투자계획에 따라 환경기초 시설에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기술

정책

개발에 따른 새로운 기초시설 설치 추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해수 담수화시설등)

※ '95년말 현재 925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중 (하수처리시설 71, 폐수종말처리시설 25, 분뇨처리시설 183, 축산폐수처리시설 3, 위생매립시설 15, 소각시설 9, 지정폐기물처리시설 3, 정수장 616)

-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에의 민간참여 확대등을 통하여 효율성 제고

○국제환경동향에 부응해 성장잠재력이 큰 환경기술개발과 사업육성을 적극 추진하면서 해외시장 확보에 주력

- G-7 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94~2001, 4,315억원 투자), 공공분야 기초기반 기술개발사업등

※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환경기술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낙후

(대기·수질오염방지시설 분야 : 60~80%, 폐기물 소각기술 : 20~30%, 사전 청정기술 : 20~30%)

3. '97년도 주요환경시책

• '97년도 환경시책의 기본방향

□ 환경복지구상으로 더욱 고조된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환경모범국가 건설을 적극 추진

□ 국가환경관리의 선진화를 바라는 대내외적 요구에 부응하고, 환경을 연계한 무역규제 추세에 적극 대처

□ 국민, 환경단체의 자발적 환경보전 의지를 결집·확산하고, 기업의 생산과정이 환경친화적으로 전환되도록 유도

• '97년도 중점 추진과제

1.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환경의 실질적 개선

가. 맑고 깨끗한 수자원의 유지·공급

□ 수자원 관리 강화 및 안정적 생활용수 공급체계 구축

○낙동강등 4대강 상수원 수질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특별 종합대책을 마련(특별법 제정 및 수질개선 기획단 운영)

○급수취약지역인 중소도시(27개), 농어촌지역(38개)의 상수도를 중점 개발하고, 도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을 신규 추진(27개 지역에 식수전용저수지등 건설)

□ 수질오염물질의 근원적 저감을 통해 맑고 깨끗한 수자원 유지

○생활하수, 축산·공장폐수의 발생원별 처리체계를 강화

○호소와 지하수의 수질보전을 위한 효율적 관리기반을 구축

○수질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2조 5,456억 원을 투자 262개 시설 신·증설 및 3,947km 하수관거 정비)

나.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조성

□ 대도시·공단지역 대기오염원에 대한 집중관리

○ 시내버스(2,850대), 청소차(3,325대)에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고, 저공해 자동차 생산기반을 구축

○배출총량규제 시범실시(울산공단), 대기환경규제 지역 지정(대도시지역)등 오염물질 총량관리 기반을 마련

○청정연료(LNG) 및 저황유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

□ 지하공간 환경개선 및 유해전자파 관리 강화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유지기준을 설정하고, 지하 시설물에 환기설비 설치를 의무화

○전자파 인체보존 권고기준을 설정하여 운영

다. 폐기물 발생의 원천적 저감 및 자원화 체제구축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

○41개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공동으로 20개 과제를 추진하고, 매월 기관별 추진실적을 점검·분석하여 보완

- 감량화 대상 집단급식소·음식점의 범위 확대 및 음식물 쓰레기 공공자원화시설 확충(환경부), 쓰레

기 유발부담금제 확대(농림부), 좋은 식단체 확대(복지부)등

□ 재활용 제품의 수요기반을 확대하고, 폐가전제품과 포장 폐기물의 생산자 회수·재활용 촉진

□ 폐기물 위생처리시설의 확충 및 관리기준 강화
○폐기물 매립·소각시설을 확충하고(4148억원 투자), 도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3개소)을 신규 추진

○침출수, 다이옥신등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라. 자연환경의 보전·복원 및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 자연자산의 건전한 활용을 위한 자연생태계 보전기반 구축

○생태계 보전지역 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연 자산보전기금 조성을 추진

○생물다양성 보전 국가전략을 마련하고, 생물종 개체별로 서식지 보전·복원대책을 추진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습지와 민통선 이북지역·비무장지대 보전방안을 강구

□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체계를 구축, 인체 및 생태계 피해 최소화

2. 환경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

가. 정부의 환경관리역량 제고

□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 및 실효성 제고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업무등을 전문연구기관에서 수행토록하고, 평가협의기준 초과부담금 및 공공사업 재평가 제도를 도입
- '97년 상반기중 환경영향평가법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 환경오염사고 대응능력 강화 및 환경분쟁조정기능 활성화

○환경오염사고 우려지역을 특별 관리하고 민관통합 감시 체계를 구축

○환경분쟁조정대상의 확대,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및 환경단체의 대리 참여 인정등 분쟁조정제도 개선

□ 환경기준의 선진화

○환경기준 설정대상 오염물질 항목수를 연차적으로 확대

○21세기에 적용할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여 사전예고

나. 첨단환경기술의 개발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 효율화

□ 환경기술개발의 지원 강화

○실용성이 큰 환경기술개발을 중점 지원('97년 558억원)

○중소기업등 민간의 환경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지속적인 재정지원 실시('97년 60억원)

□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의 효율화

○환경기초기술 운영 종합지침서 보급, 기술지원등을 통해 적정관리 도모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에 민자유치등 민간참여 확대방안 추진

다. 환경외교의 강화

□ 지구환경보전 활동에 주도적 참여

○선진국 정상 다수의 참여가 예상되는 UN 환경특별총회('97. 6. 뉴욕)에 참여하여 국제적 환경협력의 지를 표명

○OECD 가입에 따른 후속조치(화학물질관리분야 등) 적극 추진

□ 환경·무역연계 국제동향에 적극 대처

○환경·무역연계 국제회의에 참여, 우리입장 적극 반영

○국제논의 동향을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자치단체등에 확산

3. 민간의 자율적 환경보전 활동 지원

가. 환경공동체 건설을 위한 환경보전 실천운동의 결집·확산

정책

- '97 세계 환경의 날 행사 개최('97. 6, 서울)
 - 21세기 환경윤리와 철학을 담은 서울선언문 발표
 - 민간단체 주관의 각종 행사를 지원
- 민간환경보전운동의 활성화
 - 민간환경단체의 의견수렴 기회를 확대하는등 협조강화
 - 민간단체의 자생적 환경보전운동을 적극 지원

나. 녹색소비·생산문화 확산

- 녹색소비형태의 정착
 - 감량화, 재사용, 재활용등 근검절약을 통한 환경친화적 소비운동 적극 추진
 -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3대 실천운동 전개등으로 환경보전형 교통문화 정착
 - 환경마크제도 활성화등을 통한 환경친화상품 소비확대 유도
- 기업의 자율적 환경관리체계 정립
 - 환경친화기업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지역별 친화기업 협의회를 구성, 기술·정보교류 활성화
 - 기업체의 생산공정 개선등을 통한 오염물질 총량삭감을 유도하고 삭감에 상응한 인센티브 부여제 도입

4. 바람직한 기업의 대응방안

가. 올바른 환경관의 정립

- '80년대까지는 기업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일종의 부담으로 간주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정부의 정책의지를 보면서 적당히 대응
 - '90년대 들어 페놀사고등 대형환경오염사고의 빈발과 브라질 리우유엔환경회의 등의 영향을 받아 변화되기 시작
 - 기업차원에서 환경캠페인, 녹색운동등 활발한 환경보전운동이 전개되는 추세
- 과거는 환경이 기업의 필요를 충족시키던 시대였으나, 이제는 기업이 환경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시대
 - 값이 다소 비싸더라도 소비자들은 이제 환경을 덜 해치는 제품을 선호

- 우리나라 국민들은 매연저감을 위해 버스요금등 공공요금의 인상을 감수하겠다는 여론이 우세(한국환경기술개발원 국민의식조사, '96.3)
- 또한 경실련, 환경운동연합등 4개 민간단체와 중소기업 중앙회등이 공동으로 상습적 환경법규 위반업체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전개중

□ 따라서 국가로부터 주어지는 환경규제기준의 준수등 방어적 대응에서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대응으로서 전환이 필요

- 선진국 기업들은 이미 스스로 국가가 정한 기준보다 더 강한 자체환경기준을 설정, 운영

나. 기업의 협조 및 역할

- 1)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의 정착
 - 경영자의 환경보전의지, 자원·에너지관리의 효율성, 생산공정 및 제품의 청정성, 배출오염물질의 적정관리, 지역환경활동 등이 고려된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를 적극 도입·정착
- 2) 쓰레기 감량 및 재자원화 체제 구축
 - 생산단계에서 폐기물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폐기물 발생업체별로 감량화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
 - 폐자원의 원료사용 비율을 확대하고 제품의 생산단계에서 부터 재활용을 고려
 - 재활용제품의 우선 구매·사용 및 에너지 절약
- 3) 산업폐수 및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과 적정처리
 - 산업폐수 10% 줄이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폐수 재이용기술개발 및 시설 설치
 - 생산공정을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저오염 공정으로 개선
 - 저항유등 가급적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연료사용을 확대하고, 발생되 오염물질을 최대한 적정처리
 - 물류체계 개선, 자동차 운행저감 등을 통해 자동차 대기 오염의 획기적 저감
- 4)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적극 추진
 - 농수산물의 약 70%가 수입되나, 하루에 발생하는 전체 생활쓰레기(47,774톤)의 31.6%가 음식물 쓰레기

로 버려지고 있음

- '96. 9월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음식물쓰레기 반입거부문제 발생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최소화, 재활용처리 중요성 부각
- 구내식당에서의 『잔반 남기지 않기』를 생활습관화 하도록 전직원 교육 및 고속발효기 설치등 재활용 관심
- ※ 음식물쓰레기 20%감량시 연간 처리비용 약 200억원 절약, 음식 재료비 약 1조 6천억원 절감 가능

5)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철저

- 산업의 고도화로 화학물질의 유통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인체 및 생태계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이 크게 증대 되고 있음
- 대기·수질·토양·지하수등 각종 환경오염의 주요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사용량을 최대한 줄여나

가고, 저독성 대체물질 개발, 유해물질에의 노출 및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정 개발에 노력

○유독물은 그 독성이 강하여 적은 양의 누출사고로도 주변 자연환경에의 피해는 물론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 지난해 관련법을 개정하여 유독물 사고시 위해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자체 방제계획의 수립을 의무화(전담인원 확보, 조기경보체제 및 구호·복구계획 수립등)

- 또, 유독물 사고시는 원인자가 피해보상뿐 아니라 복구비용까지도 부담하도록 제도화하고 그 일환으로 사고보험 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임

○기타 유해화학물질, 유해폐기물등 수출·입유통, 관리문제에 정부, 기업 등의 공동대응 노력 필요

제2회 환경보전 비디오 작품 공모

- 주 제 : 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 주 최 : 환경보전협회 대전·충남지회
- 공모기간 : '97. 4. 1 - 9. 30 (6개월간)
- 응모대상 : 일반시민, 대학생 및 비디오작가, 관련직업 종사자
- 소 재

분야	소	재
대 기	자동차, 아파트단지 등의 매연에 의한 대기 환경오염과 대책, 배출업소의 대기오염, 배출·방지시설별 운전관리 사례	
수 질	가정, 공장등에 의한 하천오염과 대책, 유원지·წყ수터 등의 수질오염 현황 또는 수질 생태계 현황조사내용, 배출업소의 폐수배출방지시설별 운전관리방법, 리사이클저감 사례 등	
폐기물	종량제 실시에 따른 분리수거와 재활용실태(일반적인현황), 품목별 분리수거부터 운동, 재활용 상품제조, 유통사이클 취재, 기타 폐기물처리에 따른 2차 환경오염의 문제점 및 대책, 행정기관의 폐기물 정책, 관리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배출업소, 집단급식소, 단체 등의 다량 배출폐기물의저감 또는 리사이클 효율화 방안, 사례 등	

* 특정기관, 업체 무단촬영 등 감시고발 사례는 지양함.

* 기업체 임직원의 경우 광범위한 환경친화 또는 경영체계 진행사례도 가능함.

- 응모방법 : 녹화시간 편당 25분 - 30분(각종영상·음향·편집기법 활용작품 또는 순수 초보자의 작품도 출품가능)
- 입선작발표 : '97. 10. 20(개별통지)
- 시상내역 : 대상1편-대전광역시장 상장 및 상금(100만원)/특선1편-환경보전협회장 상장 및 상금(50만원)/입성2편-환경보전협회 대전·충남지회장 상장 및 상금(30만원)
- 접수·문의처 : 환경보전협회 대전·충남지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133 대전상공회의소내, TEL.(042)486-8057)